

제223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20. 6. 19.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87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 5. 29.(금)
- 라. 회부일자 : 2020. 5. 29.(금)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금천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금천구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결산개요
- 나. 세입·세출의 결산
- 다. 재무제표
- 라. 성과보고서
- 마. 결산서 첨부서류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129조(예비비), 제134조(결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 관련서류 : 2019회계연도 결산서(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

5. 검토의견

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표1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B)			보조금 반납금 (C)	집행잔액 (D)	비율	
			계(B)	명시이월	사고이월			B/A	D/A
합 계	608,956,892	502,826,173	52,831,243	39,127,143	13,704,100	6,909,515	46,389,961	87	76
일반회계	590,784,762	495,030,501	50,178,201	37,454,225	12,723,976	6,875,355	38,700,705	85	66
특별회계	18,172,130	7,795,672	2,653,042	1,672,918	980,124	34,160	7,689,256	146	423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대비 집행잔액은 7.6%로 전년(8.9%)대비 1.3%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7%로 전년도(9.6%)대비 0.9% 감소함.

나.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277억 5,800만원이며, 지출액은 1,632억만 9,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17억 9,500만 원, 보조금반납금이 14억 9,200만 원, 집행잔액이 311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3.6%임. 구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 8.7% 보다 4.9% 높음. 표2 참조

표2 행정재경위 소관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집 행 잔 액	
					금 액	비 율
계	227,758	163,290	31,795	1,492	31,181	13.6%
민원감사담당관	195	179	0	0	16	8.2%
기 획 재 정 국	34,770	12,469	210	22	22,069	63.5%
행 정 문 화 국	177,279	137,099	31,224	474	8,482	4.78%
보 건 소	15,514	13,543	361	996	614	3.95%

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예산현액은 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12,8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100%임.

주요내용은 표3 참조

표3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결산서p)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세입결산액(B)	징수율(B/A)
계	0	612,820	612,820	100%
민원감사담당관 (63p)	0	612,820	612,820	100%

2019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51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7,879만 7,24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0원, 보조금반납금이 0원 집행잔액이 1,633만 5,760원임.

주요내용은 표4 참조

표4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결산서p/ 보조자료p)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C)	비율 (C/A)
계	195,133,000	178,797,240	0	0	16,335,760	8.37%
민원감사담당관 (125p/11p)	195,133,000	178,797,240	0	0	16,335,760	8.37%

1). 예산의 전용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의 전용은 3건 1,415만 원임. 청렴 홍보물 구매비 부족, 세계인권선언 기념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전용임.

상세 내역은 표 5 참조

표5 민원감사담당관 예산의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액	전용액		사유
			감액	증액	
민원감사담당관(3건)		92,360	14,150	14,150	
주민참여감사 활성화(성인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2,500	1,930		청렴홍보물 구매비 부족 민원감사담당관-10673(2019.1 1.12.)
청렴금천 실현	201-01 사무관리비	6,280		1,930	
인권기반 도시수립	301-09 행사실비보상금	800	220		세계인권선언 기념 홍보물 제작 민원감사담당관-11997(2019.1 2.05.)
	201-01 사무관리비	12,220		220	
기본경비	202-01 국내여비	70,560	12,000		부서 운영물품 구매비 부족 민원감사담당관-10673(2019.1 1.12.)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12,000	

2). 집행잔액

2019회계연도 민원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은 1,633만 5,760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8.37%로 2018회계연도의 30.7%에 비하여 22.33% 감소하였음. 집행잔액 사유는,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미발생 300만원과 지출잔액 1,333만 5,760원 임. 주요내용은 표6 참조

표6 민원감사담당관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원)

부서명	예산현액 (A)	집행잔액 (B)	비율 (B/A)	사유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예비비
계	195,133,000	16,335,760	8.37%	0	0	3,000,000	13,335,760	
감사담당관 (125p/11p)	195,133,000	16,335,760	8.375	0	0	3,000,000	13,335,760	

3). 검토의견

민원감사담당관의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은 1,633만 5,760원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8.37%로 2018회계연도의 30.7%에 비하여 22.33% 감소하였으나 구 전체 집행잔액 비율 7.6%에 비하여 높은 편이나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사유 미발생 300만원과 지출잔액 1,333만 5,760원으로 2018회계연도 대비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한 것으로 보임.

붙임 관련법령 각 1부.

「지방자치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와 감사의견서를 받은 경우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감사의견서와 감사위원의 성명을 지방의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